

「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」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

- 국가기간 전력망 보상·지원 확대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 준비 착수 -

「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」(이하 “전력망특별법”)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.

이번에 의결된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, AI·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으며,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하여 지난 2.2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.

이 법 제정에 따라, 정부는 우선 범정부·지자체·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“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” 를 설치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. 아울러, 선하지 매수 청구권, 주민 재생e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·지원 확대와 함께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하였다. 마지막으로, 인허가 의제 확대(기존 18개 → 35개), 부대 사업(진입로, 작업장 등)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등이 도입되었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·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. 또한, 위원회 구성, 지자체·지역사회에 대한 소통·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.

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“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되어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 라며, “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” 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	책임자	과 장	최성준 (044-203-3930)
		담당자	사무관	유용상 (044-203-3931)

◇ 무탄소전원 전력계통 연계,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등을 위해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□ (대상) 345kV 이상 대용량 송·변전 설비* 중 전력망위원회에서 선정

* 동서해안 발전제약 해소 선로, 용인 반도체 등 공급선로, 호남 재생e 융통선로 중심으로 선정
< 특별법 제정 이후 송·변전설비 건설 법령 적용 체계 >

구분	345kV 이상 설비		154kV 쏘 설비
	전력망위원회 선정	일반 설비	
적용	전력망 특별법 적용	전원개발촉진법 적용	

□ (거버넌스)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 구성

- (구성) 위원장 1명(국무총리) 및 관계부처·지자체·전문가(국회 추천 등) 위원
- (역할) 대상사업 선정, 갈등조정(입지선정 등), 범부처 이해 조정 등

□ (기본계획) 30년 단위(5년 주기) 초장기 국가 전력망 확충 전망 제시

□ (특례) 인허가 특례, 보상현실화, 입지선정 기간 단축 등

- (인허가) 의제 사항 확대*, 지자체 부대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 등

* 기존 전촉법 18개(도로법, 하천법, 국제법 등)+신규 17개(백두대간보호법, 해사안전법, 건축허가 등)

- (보상·지원) ①토지주와 지역주민 지원확대 및 ②지자체 재정 지원

* ① 선하지 매수, 송전설비주변법 대비 보상·지원 확대 등

② 국가기간 전력망(가공선로) 경과 지자체에 기설선로 지중화 지원 등

- (입지선정) 지자체 협조 의무, 기존(24개월) 대비 입지선정 기간 단축, 생략 등

* 전체 지중화 설비, 기존 설비 활용 설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지선정 생략 가능

□ (상생협력) 정부-한전의 지자체 지원 및 정부의 한전 지원 원칙

□ (SOC 공동건설) 전력망 설비와 철도·도로 공동건설방안 근거 규정

□ (사업자) 송전사업자(한전)를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자로 규정